

<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과제(아이디어) 제안서>

규제 혁신 제안 과제	연구개발특구의 영공(하늘), 영해(바다)의 지정 필요성
분 야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창업/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성장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발관리/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기술사업화 인프라
관련 규정·제도/법령	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(이하'특구법') 특구법 제2장 특구의 지정 등
소관 기관	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
규제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은 영토(땅)를 기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. 특구를 지정할 때 해당 구역의 지반을 기준으로 신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. ○ 이렇다 보니 해당 땅을 제외한 영공(하늘)이나 영해(바다)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 신기술 개발중 비행장치(드론, 항공기) 또는 신기술 선박을 개발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.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국제적으로 신기술 친환경 선박(수소선박) 과 신 비행장치(무인드론, 친환경항공기, 탑승형 드론 등)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KF-21이 공개되는 등 날로 그 기술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. ○ 하지만 특구내 기업이 신기술 적용 비행장치와 선박을 개발하더라도 현재 연구개발특구-신기술실증특례 제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. 자동차의 경우 땅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가능하지만 비행장치와 선박의 경우 새로운 신제품을 테스트하려해도 기준이 없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○ 실제로 부산에서 관련 신기술적용 선박회사의 입주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테스트 운영을 할 바다가 특구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관련 제도의 적용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.
규제개선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영토 뿐만 아니라 영해(바다)와 영공(하늘)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아 특구의 지정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공(하늘)과 영해(바다)에서 특구내 입주기업들이 신기술실증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<p>ex) 영해(바다) :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(한국해양대학교) 반경 3km 해역 ex) 영공(하늘) :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(김해공항) 반경10km 고도 10km 영공</p>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해(바다) 및 영공(하늘)의 특구지정을 통해 친환경&신기술 선박 및 비행장치를 개발하는 특구내 입주기업의 신기술실증특례 제도의 적용 가능 - 친환경&신기술 선박 및 비행장치의 테스트 운영이 특구내 가능 ○ 특구내 신기술 비행장치 및 선박(수소) 제조업체의 R&D역량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관련 분야 선도국가로서의 탈바꿈 기대
비고	○